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2.

발 의 자 : 권향엽 · 오세희 · 남인순  
이주희 · 진성준 · 강준현  
김종민 · 최민희 · 정일영  
임미애 · 이재관 · 고민정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활동 중인 764만 1,749개 대상 중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수는 674만 7,159명임에 비해, 실제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5만 3,075명으로 가입률은 0.8%에 불과한 실정임.

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,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2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41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제1항 중 “자영업자(이하 “자영업자”라 한다)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”를 “자영업자(이하 “자영업자”라 한다)는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“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”을 “자기의 과세소득총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1항 중 “가입 신청·승인”을 “가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제1호 중 “제5조제5항(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)·제7항,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를 “제5조제1항·제7항, 제7조제1호, 제10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연 매출 10억원

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이 법의 시행일로 한다.

제2조(보험료 지원의 특례) ① 이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로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「고용보험법」 제69조의3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② 국가는 제1항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충족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 및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6개월 동안 피보험자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9조의2(자영업자에 대한 특례)</p> <p>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<u>자영업자(이하 “자영업자”라 한다)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,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</p> <p>④ <u>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<u>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</u></p>	<p>제49조의2(자영업자에 대한 특례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자영업자(이하 “자영업자”라 한다)는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 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월(月)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.

⑦ ~ ⑨ (생략)

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(月)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.

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자기의 과세소득총액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⑦ ~ ⑨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  
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 
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  
하지 아니하다.

⑪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 
신청·승인 및 보험료의 부과  
·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  
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⑫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계  
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 
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. 이  
경우 “사업주”는 “자영업자”로  
본다.

1.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  
계의 성립·소멸에 관하여는  
제5조제5항(같은 항 후단은  
제외한다)·제7항, 제7조제3  
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  
까지를 준용한다.

2. 3. (생략)

⑪ -----가입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⑫ 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.

1. -----  
-----  
제5조제1항·제7항, 제7조제1  
호, 제10조제1호 및 같은 조  
제3호-----.

2. 3. (현행과 같음)